

---

취 미 향 어 촌 정 주 어 향 지 정  
전 락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4. 05

# 목 차

<b>제1장 계획의 개요 및 목적</b>	<b>1</b>
1.1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2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2
1.3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3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3
1.5 계획의 내용	4
1.6 기대효과	12
<b>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b>	<b>22</b>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23
2.2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25
<b>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b>	<b>39</b>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40
<b>제4장 대안의 설정</b>	<b>42</b>
4.1 대안의 종류	43
4.2 대안의 비교·검토	44
<b>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b>	<b>49</b>
5.1 평가항목 대상지역의 범위 설정	50
5.2 조사·예측·평가 방법	52
<b>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b>	<b>54</b>
6.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55
6.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5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 1.1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3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1.5 계획의 내용
- 1.6 기대효과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에 위치한 쉬미항은 소규모어항으로 어항 시설로 물양장 50m가 축조되어 있음.
- 본 쉬미항의 항 여건상 항내 및 주변수역 수심이 얕아 조수 대기로 한정된 시간에 어선 입출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곽시설 및 접안시설 부족으로 본격적인 성어기시에 본 어항을 이용할 수 없어 인근의 어항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전반적인 진도군내의 어항 현실은 쉬미항에 비추어 볼때 어항시설이 상당부분 부족하고 현 지역 주민어선과의 혼잡으로 마찰 우려가 있으며, 약한 파랑에도 어선 충돌과 기관 파손 등으로 어민의 재산상 손실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상기 현실에 비추어 종래의 연안 어업에서 연근해 어업으로 어장 활동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지역 어민의 원활한 어업 활동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조석에 관계없이 입출항이 자유롭고 황천시 어선의 안전 정박을 위한 어항 시설을 갖춘 신규어항 지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형편임.
- 계획지구인 쉬미항은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에 소재한 소규모어항으로 어항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현지어민과 개인기업간에 부두이용이 혼재되어 있고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회 쉬미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어로활동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2.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거

- 본 계획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별표2]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라. 항만의 건설	3)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기본계획	▶ 어항구역 면적 : 135,858㎡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 1.3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 등을 공개함.

<표 1.3 - 1>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23. 12. 12 : 진도군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23. 12. 20 : 진도읍 쉬미항 현장 주민협의
- 2024. 03. ~ : 어촌정주어항 지정 관련 협의(전라남도청) 및 전라남도 쉬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건의(군직원 및 현지주민)
- 2024. 03.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4. 04. ~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진행
- 2024. 05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 공람
- 2024. 07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 2024.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관계기관 협의
- 2024. 08 : 주민의견 수렴 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24. 10.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
- 2024. 11.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진행

## 1.5 계획의 내용

### 1.5.1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쉬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쉬미항 일원
- 어항구역 면적 : 135,858㎡(육역 : 16,663㎡, 수역 : 119,195㎡)
- 계획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
- 계획시행자 : 진도군
- 승인기관 : 진도군
- 사업비 : 83.6억원

<표 1.5 - 1> 어촌정주어항 지정기준

구 분	내 용
법적기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 어항지정의 기준)
적용기준	· 어선이용 빈도(연간)1,250회 이상 · 현지어선 10척이상 - 상기 항목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
※ 상기 2개 기준항목 중 1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표 1.5 - 2> 어항지정기준 적합성 산정결과

구 분	쉬미항 입지여건 검토
해역특성	- 본 쉬미항은 동절기에 계절풍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는 지역으로 파고 영향은 0.25m~0.68m정도이며 과업대상지내의 수심은 DL(±)0.0m~DL(-)5.0m로 수심이 분포하고 있음.
어항시설 및 이용현황	- 현재 쉬미항은 물양장과 선착장이 축조되어 있으며 어선 접안을 위한 물양장 시설과 어획물을 양육 및 판매 등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선착장시설이 부족한실정임. - 현재 쉬미항을 이용하는 어선은 신월리의 어선으로 총 43척이 쉬미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어선중 5톤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어촌어항법 제10조」의 해역별 어촌정주어항 지정 어선척수(10척이상)를 감안하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취미항 입지여건 검토
어선안전수용률	- 현재 취미항의 항내 정박 가능어선은 정온도 확보시 만족한 것으로 검토, 대피시 총어선(43척)에 대한 어선안전수용은 만족한 상태임.
인근 수산업현황	- 현재 취미항이 속해있는 신월리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는 신월어촌계가 있으며, 어촌계원수는 약 36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취미항의 어선수는 진도읍 전체어선(263척)의 약 16%인 43척이며, 주요어업으로는 연안복합, 자망, 양식어업순으로 종사하고 있음.
지정시 경제성분석	- 우리나라 서남쪽에 위치한 바닷가, 남해안 다도해 비경 등 지역적 특색을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모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낙후어촌의 발전에 따른 어민의 삶과 질 향상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산정결과	- 취미항을 이용하는 총어선이 43척으로 어촌정주어항 지정은 척수와는 상관없으며, 어선수는 진도읍의 약 16%,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수는 진도읍에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취미항이 속해있는 산월리는 군내면과 지산면 사이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여객선터미널이 있어 향후 방문객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 어촌정주어항으로서 개발이 충분하며 향후 지역발전에 상당부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됨.

## 1.5.2 계획의 내용

### 가. 진도군 어항현황

- 진도군의 어항시설은 총 111개소로 연안항 1개소, 국가어항 4개소, 지방어항 6개소, 어촌정주어항 4개소, 소규모항포구 96개소가 있음.

### 나. 취미항 어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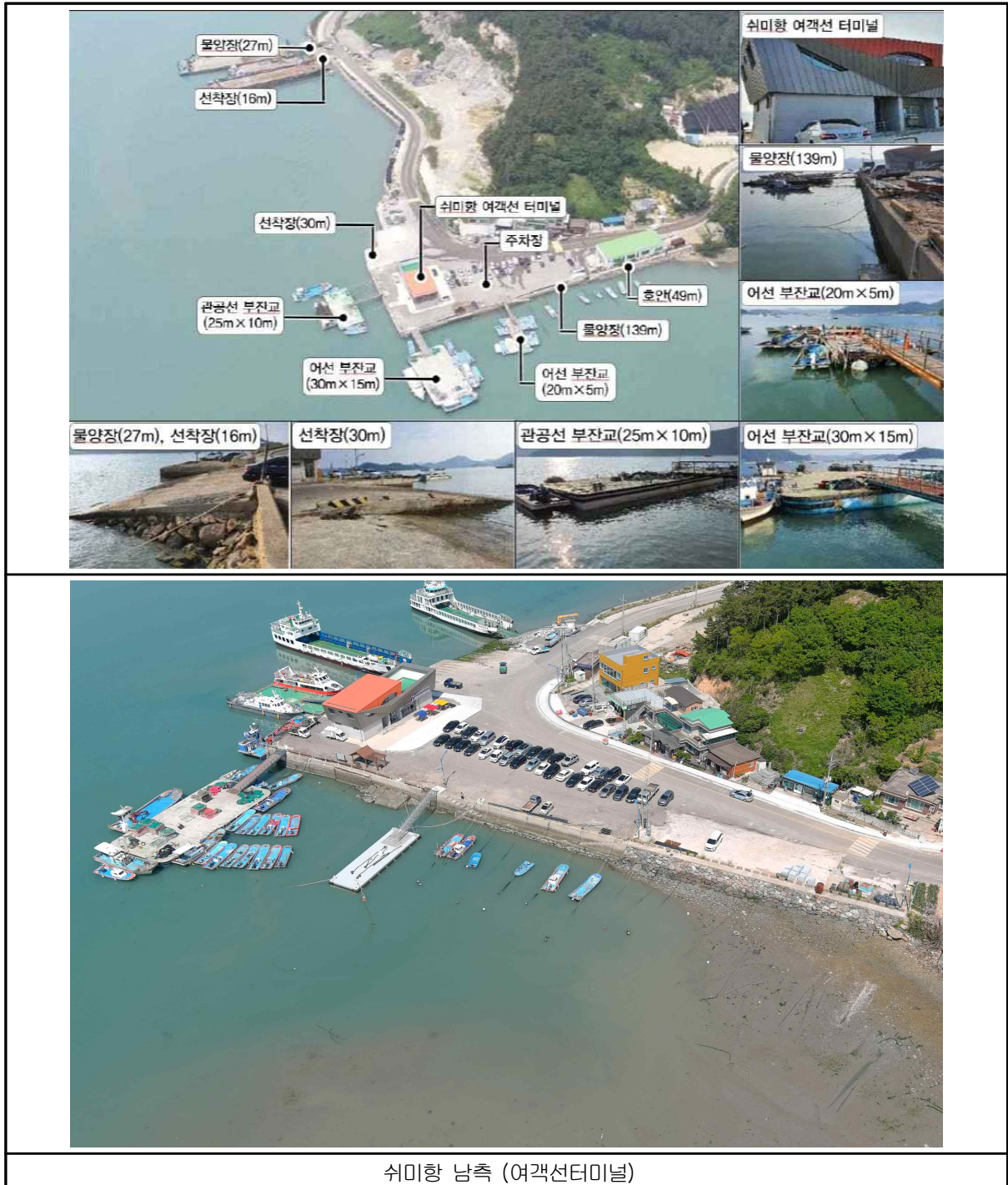
- 취미항은 북서측이 외해로 열려 있으나, 북서측 전면으로 크고 작은 섬들이 위치하고 있어 심해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음.
- 취미항은 진도군 북서쪽에 위치하며, 전두어촌계와 거제어촌계의 어업근거지, 여객선의 기항지(목포~진도~울목간), 여객선 운항(가거도~취미) 등의 기능을 가진 소규모 어항임.
- 취미항은 비법정항으로 운영중이며 관리자는 진도군수, 관리청은 진도군청임.

### 다. 취미항 어항시설현황

- 취미항의 어항시설 중 기본시설은 취미항 여객선 터미널이 위치한 남측에 호안 49m, 물양장 139m, 어선용 부잔교 2기, 관공선 부잔교 1기, 여객선 선착장 30m가 설치되어 있고, 화물선 바지선이 상시 계류중인 북측은 물양장 27m, 선착장 16m가 설치되어 있음.
- 물양장 배후는 취미항 여객선 터미널과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야적장 및 어구건조(수리장) 등 어업활동을 위한 기능시설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됨.

<표 1.5 - 3> 기존 취미항 시설물 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비고	
기본시설	호안	49m	
	물양장	166m	화물선 부두 27m
	선착장	46m	화물선 부두 16m
	부잔교	3기	
기능시설	야적장	-	



(그림 1.5 - 1) 취미항 어항시설 현황사진

## 라. 쉬미항 수용가능 어선척수

- 현재 쉬미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총 43척이며, 진도읍 산월리를 세력권으로 하는 산월(23), 안치(20) 등이 쉬미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어선중 5톤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1.5 - 4> 쉬미항 선박 현황

단위별	톤급별	총계(척)	동력어선(척)			무동력선(척)
			5톤미만	5~10톤	10톤이상	
계		43	33	-	6	-
진도읍 산월리	산월	23	14	3	6	-
	안치	20	19	1	-	-

- 수용가능 어선척수는 접안시설을 이용하는 대피어선과 항내 해상정박에 의한 대피어선을 포함한 척수로 설정함.
  - 현재 쉬미항의 어선 접안시설은 약 100m(어선용 부잔교 2기(30m+20m)\*2면)이며, 부잔교에 어선이 접안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쉬미항은 항내 수면적이 협소하고, 수심이 낮아 황천시에 대피어선 총 43척에 대해서는 쉬미항 인근 어항에 분산 대피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이러한 항 여건상 총어선에 약 100%정도 본 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용가능 어선척수를 약 43척으로 가정하며, 전부 해상 정박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함.
- 수용가능 어선척수 : 43척 \* 100% = 43척

<표 1.5 - 5> 어선안전수용률 산정

구 분	수용대상 어선척수	수용가능 어선척수	어선안전수용률	비고
쉬미항	43척	43척	100%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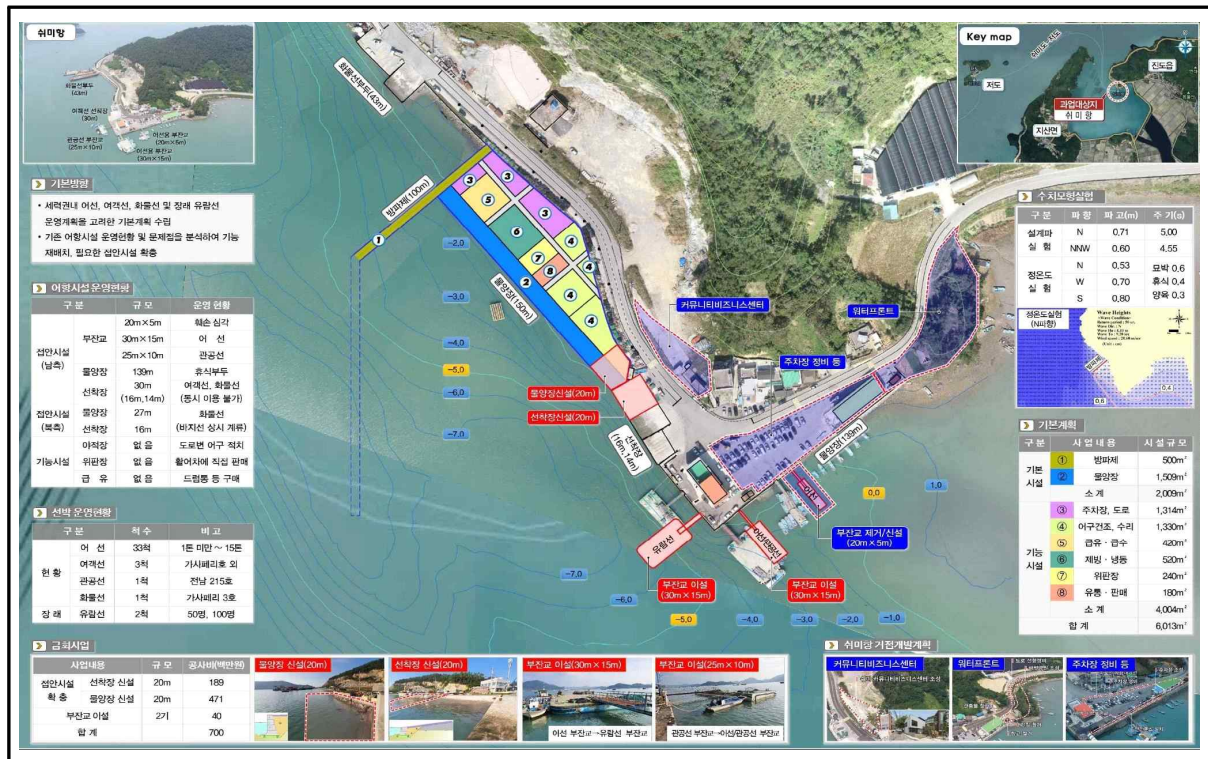
- 현재 쉬미항은 접안시설인 물양장 시설은 이용 어선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며, 부잔교 양측에 임시로 가접안을 하고있는 실정임.
- 황천시 대피어선 43척에 대한 항내 정박 가능어선은 약 100%정도로 만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필요시 나머지 어선은 인근 어항으로 대피하고 있는 실정임.

### 마. 어항시설계획(안)

- 육상기능시설의 계획면적은 소요면적이상을 확보하였으며, 취미항의 실제 이용여건 및 시설현황을 반영하여 금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1.5 - 6> 어항시설 계획(안)

구분	시설명		용도별	면적(㎡)	비고
기본시설	A	기본시설	① 방파제 등	500	
			② 물양장, 선양장, 선류장, 선치장 등	1,509	
	소 계			2,009	
기능시설	B	수송시설	③ 주차장, 도로	1,314	
	C	어선-어구보전시설	④ 어구건조, 야적장, 어업용 창고 등	1,330	
	D	수산기능지원시설	⑤ 급유, 급수 등	420	
			⑥ 제빙·냉동·처리 가공시설 등	520	
			⑦ 위판장	240	
			⑧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 등	180	
	소 계			4,004	
합 계				6,013	



(그림 1.5 - 2) 취미항 기본계획 수립(안)

**바. 접안시설 확충 및 부잔교 계획**

<표 1.5 - 7>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및 부잔교시설의 재배치·교체

사업내용		규모	비고
접안시설 확충	선착장 신설	20m	경사식물양장
	물양장 신설	20m	직립식물양장
부잔교	이 설	2기(30m*15m, 25m*10m)	관공선 부잔교 1기→관공선/어선 어선용 부잔교 1기→유람선
	제거/신설	1기(20m*5m)	어선용 부잔교 1기→어선



(그림 1.5 - 3) 접안시설 확충 및 부잔교시설 재배치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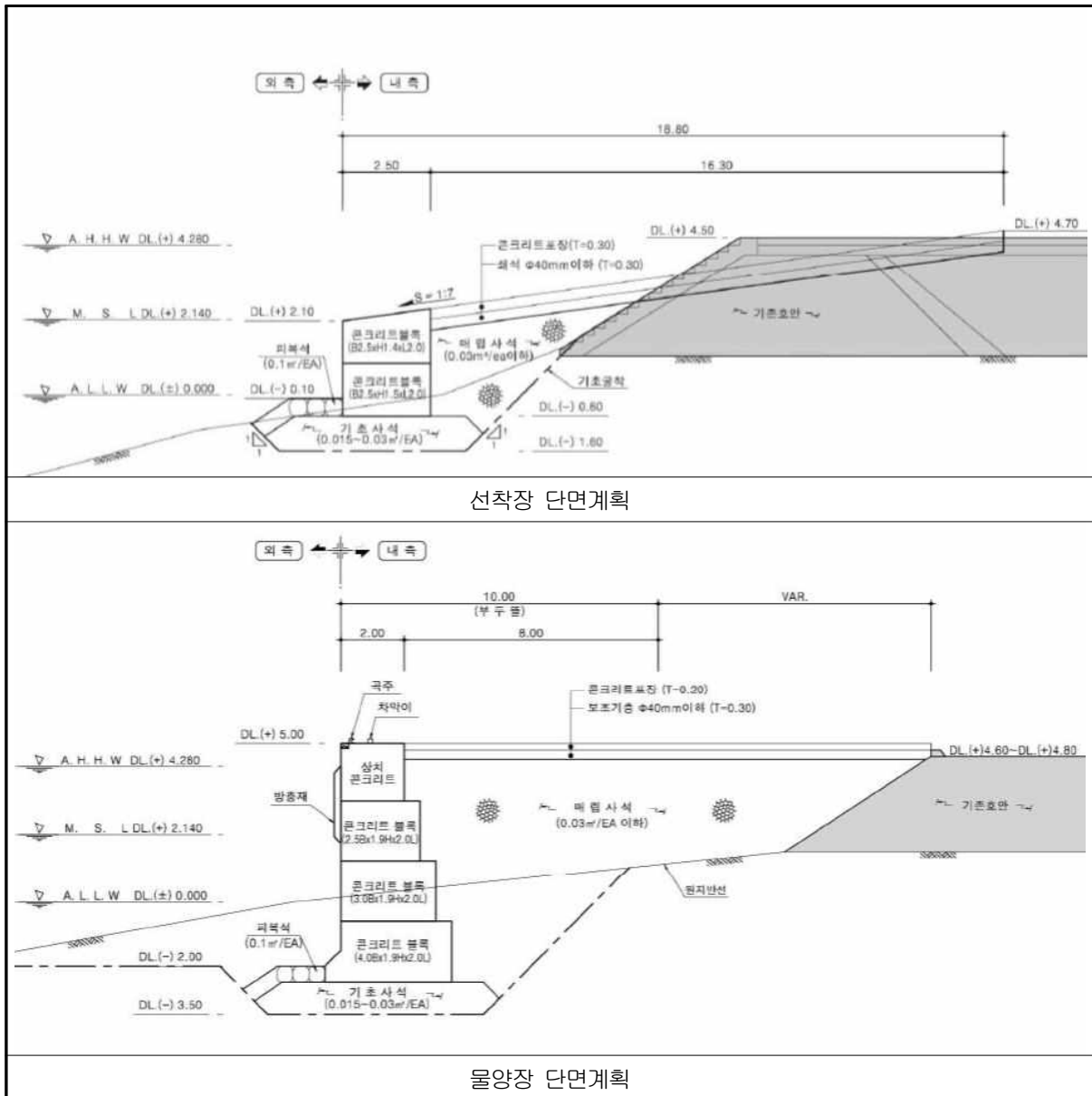
## 사. 접안시설 확충에 따른 단면계획

- 선착장신설구간의 마루높이 및 사면경사는 기존 선착장과 접속되는 구간의 단면제원과 동일하게 마루높이 DL.(+)2.10m, 사면경사 1:7로 계획하였음.
- 선착장 신설구간의 소요 선석수심은 항만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DL.(-)2.00m로 검토되었고, 금회 수심측량 성과에 나타난 기존 선착장 전면수심은 DL.(-)0.10m로 소요 선석수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됨.
- 기존선착장을 이용중인 여객선(차도선)의 선수 형상은 부두의 상부 경사면에 접안할 수 있도록 경사져 있으며, 현재 수심조건에서 선박 접·이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회 선착장 신설구간은 굴착을 최소화하고 기존 선착장과 접속이 용이하도록 선석수심을 DL.(-)0.10m로 계획하였음.
- 물양장 신설구간의 마루높이는 인근 물양장 마루높이를 고려하여 DL.(+)5.00m로 계획하고, 선석수심은 대상선박 어선의 만재흘수, 여유수심을 고려하여 DL.(-)2.00m로 계획하였음.

<표 1.5 - 8> 접안시설 단면제원

구분		시설폭	사면경사	마루높이	선석수심	비고
선착장	기존	16m	1:7	DL.(+)3.10m	DL.(-)0.10m	
		14m	1:7	DL.(+)2.10m	DL.(-)0.10m	접속구간
	신설	20m	1:7	DL.(+)2.10m	DL.(-)0.10m	
물양장	신설	20m	-	DL.(+)5.00m	DL.(-)0.20m	

주)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2017)\_선석수심=선박 만재흘수×10%+여유  
 선착장 선석수심 : 1.60m×10%≒2.0m, 물양장 선석수심 : 1.50m×10%≒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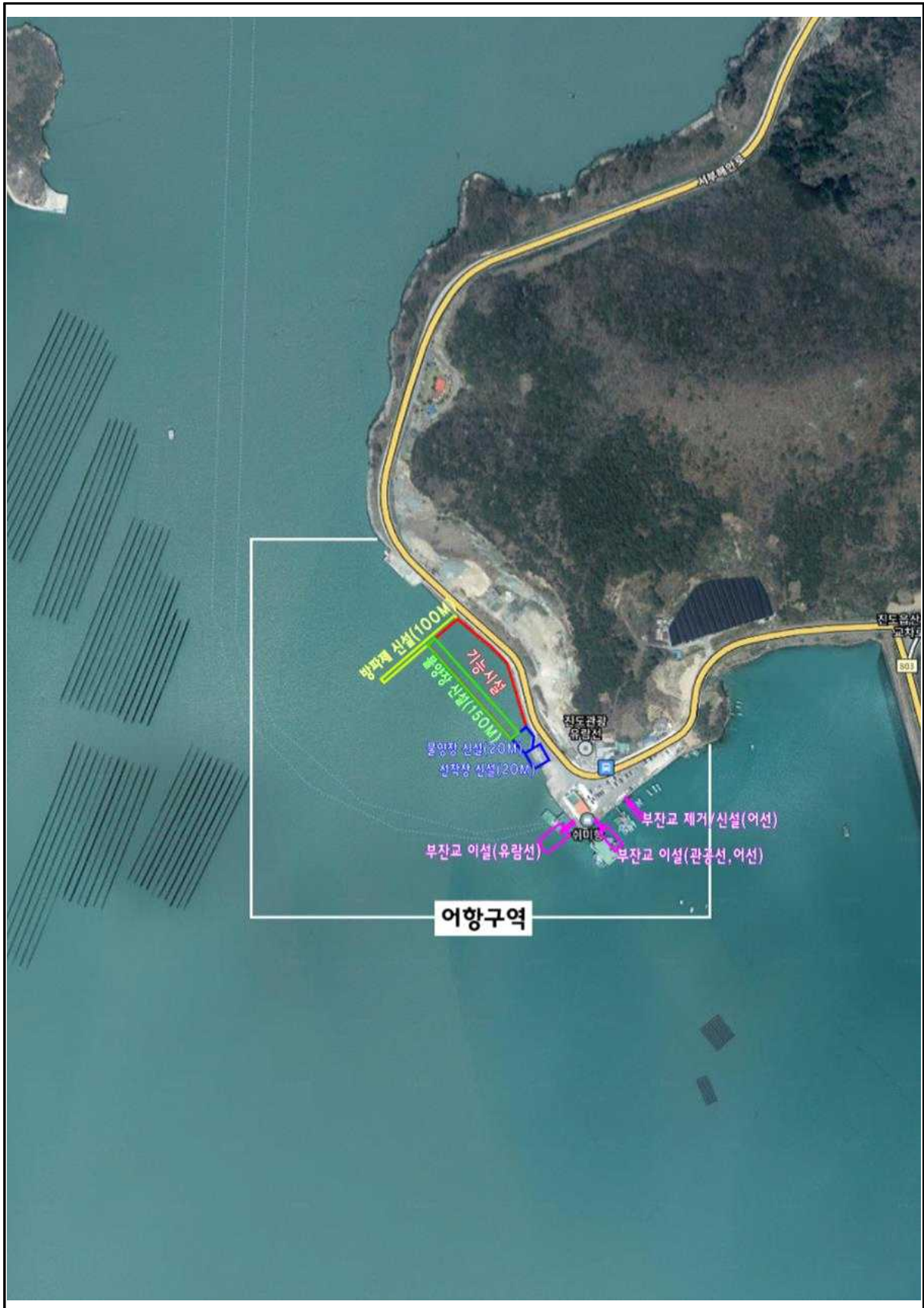


(그림 1.5 - 4) 접안시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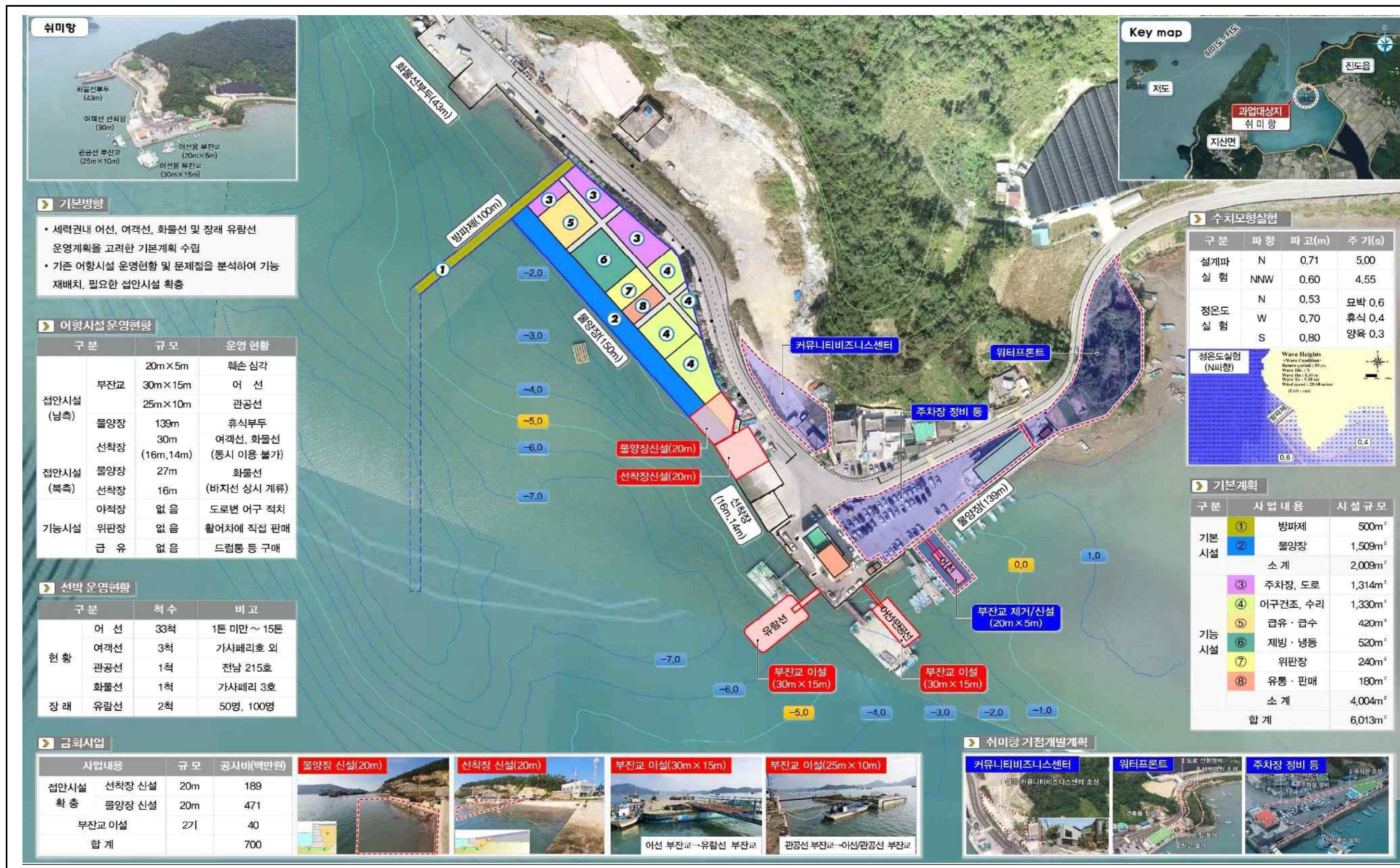
## 1.5 계획의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정주기반 구축으로 안정적인 삶의 터전 제공 및 낙후지역 활성화 도모, 효율적인 어업활동 가능 및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진도군 정주어항 개발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없으나, 사회적 또는 물리적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정주어항의 개발은 청정수산물 생산 기반 강화 및 주민소득 향상,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그림 1.6 - 2) 계획지구 위성사진



(그림 1.6 - 3) 쉬미항 기본계획 수립(안)

##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2.2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대상
  - 계획명 : 쉬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쉬미항 일원
- 주관행정기관 : 진도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서면심의 요청 : 2024. 4. 29. ~ 05.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 관계행정기관, 협의기관, 민간전문가등 9명

<표 2.1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위원


구 분	소 속	부서명	성 명	비 고
위원장	진도군	해양항만과	곽 0 0	위원장
위 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최 0 0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위 원	진도군	해양항만과	김 0 0	계획수립기관 소속공무원
위 원	(주)동아기술공사	-	장 0 0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맹 0 0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위 원	진도군	환경수질과	한 0 0	자치단체장 추천 공무원
위 원	주민대표	산월 어촌계	김 0 0	자치단체 거주 주민대표
위 원	그린진도21	-	오 0 0	민간환경단체
위 원	광주전남연구원	-	김 0 0	해수부 추천 전문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요청 공문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어촌정주어항 신규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알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항을 개발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항구적인 어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24. 04. 29.(월) ~ 05. 10.(금)  
나. 개최방법 : 서면  
다. 참석대상 : 협의회 위원 9명(위원장 포함)

붙임 1. 위원 명단 1부.  
2. 안건 1부.(별송) 끝.



진도군

---

어촌어항관리자 ..... 해양수산부/어촌지원과 ..... 대일 2024. 4. 29.  
 협조자  
 시행 해양항만과-3409 (2024. 4. 29.) 접수  
 우 5891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활마길 25 / http://www.jindo.go.kr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1/1

##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b> (쉬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라환경영향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심의위</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소규모항구인 쉬미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임.</li> <li>○ 방파제, 집안시설 설치 및 수산기능시설 등이 계획됨에 따라 이용여건별 시설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p><b>□ 심의 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인 육상/해역 모두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함.</li> <li>- 계획지구 주변 어업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영향예측 검토</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표수질보다는 해양환경(수질)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정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함.</li> </ul> </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상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함.</li> <li>- 문헌자료 활용시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신자료 인용</li> </ul> </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실시하며, 주민 등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작성하여야 함.</li> </ul> <p><b>5. 기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쉬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를 신원리에 위치한 쉬미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li> <li>○ 관련 행정계획(상위·연관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을 검토하여 동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li> <li>○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 각 항목별로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 저감방안은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li> <li>○ 동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 결과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를 작성하여야 함</li> </ul> <p><b>□ 심의 의견</b></p> <p><b>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할 기법, 내용 등의 선정사유와 그 타당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li>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해양동·식물, 해양환경, 대기, 소음·진동 등)이 예측되는 지점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적 범위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사업지구와 간접적인 영향권인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li> <li>-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제시</li> </ul> </li> <li>○ 사업지구 인근에 분포하는 어업권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계획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대안(3개 이상)을 비교·제시하고, 선정안에 대한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ul> </div>
<p>진도군 해양항만과</p>	<p>영산강유역환경청((1/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b>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해류이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황위주 조사를 실시하고 각 항목별 환경현황 및 조사범위는 사업시행 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한 현황 조사는 계절적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주요 활동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li> <li>- 현황조사 지점은 공사 시부터 운영 시까지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별(해양수질, 저질, 해양플라, 동·식물 등)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조사 항목·지점별 조사내용 제시</li> </ul> </li> <li>○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li> <li>○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매립·준설도에 대한 계획이 미결정된 바, 매립토 운용 및 준설토 처리계획(준설 공법 검토, 준설토 무기질, 설치 및 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동 사업으로 인한 대기질, 소음·진동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li> <li>○ 공사 시 유류사에 의한 사업지역 및 주변해역의 해양수질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탐방지막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사구간 주변 해역에 대한 선박의 통행 안전성 확보 및 해상오염사고 방제대책을 제시하여야 함</li> <li>○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li> <li>○ 동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주변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각 항목별 영향예측·분석시 사업지구 주변의 개별 사업장(계획 포함)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누적하여 예측·분석하고,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해양환경 영향을 지속적·누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다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제시)</li> </ul>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많은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ul> <p><b>5. 약식평가 선정가능 여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p><b>6. 기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서 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이어야 하며, 지점선정, 예측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기술포럼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에 따라 충실히 작성</li> </ul> </li> <li>○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라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등 확인하여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4. 5. . (인)</p> </div>
<p>영산강유역환경청(2/3)</p>	<p>영산강유역환경청(3/3)</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b> (취미형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심의4</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취미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항의 지정 목적, 이용절대, 기존의 적합성 등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li> <li>○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li> </ul> <p><b>□ 심의 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별 검토 범위 설정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함.</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주민들이 의견수렴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함.</li> </ul> <p><b>5. 기 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다양한 이해당사자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b> (취미형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심</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취미형 어촌정주어항 지정」에 대한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등에 따라 계획특성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어촌정주어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li> </ul> <p><b>□ 심의 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취미형 어촌정주어항 지정에 대한 계획으로 계획특성상 해양환경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해양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함 - 계획지구 주변으로 어업권등이 분포하고 있는바,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까지 평가대상지역을 설정</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2023. 04. 13.」에 준하여 사업특성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토록 하여야 함.</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추가 의견 : 계획시행에 따른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해양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해양수질·저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함.</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추가의견 : 해양생태계 및 해양수질·저질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예측·평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본 계획과 연계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 추가의견 : 해양생태계 조사시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 및 저질 등을 선정하여야 함.</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장소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선정하시기 바람</li> </ul> <p><b>5. 기타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진도군 해양항만과	(주)동아기술공사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취미형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유동 변화 및 준설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b>□ 심의 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수유동 변화 및 준설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p><b>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동·식물상 및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문헌조사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사업지 주변을 대상으로 해양동·식물상 및 해양수질·저질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li> <li>○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li> <li>○ 현재 취미항과 주거지역으로부터 항내측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2024. 5. 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b> (취미형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심의</p>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치고, 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규모 등을 수립하여야 함.</li> </ul> <p><b>□ 심의 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 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대상지가 해당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해양환경에 대한 환경보전 목표를 수립, 달성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 수렴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정리하며 동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li> </ul> <p><b>5. 기 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으로 인한 반경 1km내의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나 시행 전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함.</li> </ul>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진도군 환경수질과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b> (취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p> <p>심의회</p> </div>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취미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li> <l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함.</li> </ul> <p><b>□ 심 의 의 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ul> </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ul> </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li> </ul> <p><b>5. 기 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b> (취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p> <p>심의회</p> </div>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어촌정주어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li> </ul> <p><b>□ 심 의 의 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이 위치한 진도읍 산월리는 해안과 인접하게 위치하나, 육상생태계조사 및 해양환경 조사 등 관련법에 맞는 적절한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이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표수질보다는 해양환경(수질)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정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ul> </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적정함</li> </ul> </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여야 함.</li> </ul> <p><b>5. 기 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p>주민대표(산월 어촌계)</p>	<p>그린진도21</p>
<div style="text-align: center;"> <p><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b> (취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p> <p>심의회</p> </div>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파제 100m로 복식계절풍이나 태풍 등에 따른 제해에 충분하지? 특히 해안선에 수직으로만 조성된 방파제는 물의 회절이나 굴절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부가적 영향 초래 가능성 존재</li> <li>○ 화물선 부두를 포함한 방파제 건설을 통해 안전한 어항구역의 정온성 확보가 필요하며, 공유수면 배압 최소화 및 배후토지 활용 검토</li> <li>○ 실제 주차장 등 방문객의 편의시설 등은 배후지에 적극 검토하고, 어항구역은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어업활동용 위한 각종 시설 배치 검토</li> </ul> <p><b>□ 심 의 의 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에 따른 영향가능성에 대한 검토, 특히 page 56에 어업권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직간접적 영향의 범위 설정 필요(항후 갈등가능성에 대한 대비)</li> <li>○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확대 필요</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현재 어업권 지역(적점, 간점)까지 확대하여 조사 및 모니터링(사업추진 및 시설물 운영과정 포함)</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li> </ul> </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수질(해양환경)에서 영향 범위 확대 필요, 현재 계획지구와 주변 해역으로 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음.</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정시 의견 : page 32에 평가대상지역에 직접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해양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어 명확한 제시 필요</li> </ul> </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수렴은 특히 어장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ul> <p><b>5. 기 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ge 10에 어항현황도에서 해남에 3개 항 표기.</li> <li>○ page 11 : 취미항은 북측으로 개방됨</li> <li>○ page 85 : 준설토의 처리방법과 매립토의 공급대책은?</li> </ul>	<p>광주전남연구원</p>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진도군 해양항만과	<p><input type="checkbox"/> <b>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소규모항구인 쉬미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임.</li> <li>○ 방파제, 접안시설 설치 및 수산기능시설등이 계획됨에 따라 이용여건별 시설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쉬미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방파제, 접안시설 설치 및 수산기능시설등 시설계획등을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b>심의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인 육상/해역 모두 포함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함.</li> <li>- 계획지구 주변 어업권 현황등을 고려하여 영향예측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대상지는 해역/육상등 모두 포함하여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토록 하겠음</li> <li>- 해양 :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등</li> <li>- 육상 : 육상생태계, 대기, 소음진동등</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이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표수질보다는 해양환경(수질)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정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대상지는 쉬미항으로 계획시행으로 지표수질에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인 영향은 해양환경(수질)에 끼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해양환경을 검토토록 하겠음.</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함.</li> </ul> </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함.</li> <li>- 문헌자료 활용시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신자료 인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의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분류 작성토록 하겠음.</li> <li>-</li> <li>○ 영향이 예상되는 검토항목별 주요 조사시기등을 고려하여 현황조사등을 실시토록 하겠음.</li> <li>- 문헌자료사용은 대상지역과 인접한 최신자료 인용</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등에 따라 실시하며, 주민 등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을 작성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등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반영토록 하겠음.</li> </ul>	
	<p><b>5. 기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에 위치한 쉬미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li> <li>○ 관련 행정계획(상위·연관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을 검토하여 동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li> <li>○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 각 항목별로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 저감방안은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li> <li>○ 동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 결과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를 작성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쉬미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함.</li> <li>○ 관련 행정계획과 연계성 및 부합성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겠음.</li> <li>○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하며, 항목별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이 연관성을 갖도록 보고서는 검토·작성하겠음.</li> <li>○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토록 하며, 관련 심의 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를 작성토록 하겠음.</li> </ul>	
<p>영산강 유역환경청</p>	<p><b>□ 심의의견</b></p> <p>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고,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할 기법, 내용 등의 선정사유와 그 타당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함</li>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해양동·식물, 해양환경, 대기, 소음·진동 등)이 예측되는 지점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적 범위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사업지구와 간접적인 영향권인 주변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li> <li>-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제시</li> </ul> </li> <li>○ 사업지구 인근에 분포하는 어업권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li> </ul> <p>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계획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대안(3개 이상)을 비교·제시하고, 선정안에 대한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대한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예측분석에 사용할 기법, 내용 등 선정사유와 타당성을 상세히 명시토록 하겠음.</li> <li>○ 사업시행에 따라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점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에 포함토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적 범위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사업지구와 간접적인 영향권인 주변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li> <li>-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제시</li> </ul> </li> <li>○ 계획지구 주변 어업권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검토토록 하겠음.</li> <li>○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대안을 비교·제시하고, 선정안에 대한 선정 근거를 제시토록 하겠음.</li> </ul>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p>영산강 유역환경청</p>	<p>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해류이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위주 조사를 실시하고 각 항목별 환경현황 및 조사범위는 사업 시행 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한 현황 조사는 계절적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지구 및 주변 해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주요 활동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실시</li> <li>- 현황조사 지점은 공사 시부터 운영 시까지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별(해양수질, 저질, 해양물리, 동·식물 등)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조사항목·지점별 조사내용 제시</li> </ul> </li> <li>○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li> <li>○ 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매립·준설토에 대한 계획이 미결정된 바, 매립토 운용 및 준설토 처리계획(준설 공법 검토, 준설토 투기장, 설치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li> <li>○ 동 사업으로 인한 대기질, 소음·진동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li> <li>○ 공사 시 부유사에 의한 사업지역 및 주변해역의 해양수질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탃방지막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사구간 주변 해역에 대한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해상 오염사고 방제대책을 제시하여야 함</li> <li>○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li> <li>○ 동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주변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각 항목별 영향예측·분석시 사업지구 주변의 개발 사업장(계획 포함)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누적하여 예측·분석하고,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해양환경 영향을 지속적·누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따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강구·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해류이동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검토토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등 사업지구 주변 해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종의 주요 활동시기등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하겠음.</li> <li>- 조사지점은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고, 조사항목·지점 별 조사내용을 제시토록 하겠음.</li> </ul> </li> <li>○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조사를 실시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음.</li> <li>○ 매립·준설토 발생시 매립토 운용 및 준설토 처리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li> <li>○ 대기질, 소음·진동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토록 하겠음</li> <li>○ 공사시 부유사에 의한 주변해역의 해양수질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수 있도록 오탃방지막 계획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며, 주변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 및 해상오염사고 방제대책등을 제시하겠음.</li> <li>○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예측·처리계획을 제시토록 하겠음.</li> <li>○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예측, 분석등을 통해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li> <li>○ 항목별 영향예측·분석시 사업지구 주변의 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누적하여 예측·분석하고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토록 하겠음.</li> <li>○ 해양환경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li> </ul>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영산강 유역환경청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많은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6. 기 타 ○ 평가서 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지정선정, 예측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3.4.13)에 따라 충실히 작성 ○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라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평가서 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지정선정, 예측조건, 예측시 사용되는 수치등은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토록 하겠음.  ○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등을 검토하겠음.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진도군 해양항만과	<p><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쉬미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항의 지정 목적, 이용실태, 기준의 적합성등 적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li> <li>○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의 지정 목적, 이용실태, 기준의 적합성등 적정 자료를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li> </ul>	
	<p><input type="checkbox"/> 심의의견</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별 검토 범위설정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 관련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성격, 특성 등을 토대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영향권은 계획지구 구간 편입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간접영향권은 계획지구 주변지역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입지적 범위로 설정</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역 주민들이 의견수렴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항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 수렴시 충분한 홍보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음.</li> </ul>	
<p><b>5. 기타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겠음.</li> </ul>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주)동아기술 공사	<p><b>□ 총괄 의견</b></p> <p>○ 본 계획은 「취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에 대한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등에 따라 계획특성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어촌정주어항의 필요성, 타당성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p>○ 본 계획은 「취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에 대한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등에 관한 안내서’ 등에 따라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등을 검토토록 하겠음.</p>	
	<p><b>□ 심의의견</b></p> <p><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p> <p>○ 본 계획은 취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에 대한 계획으로 계획특성상 해양 환경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해양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주변으로 어업권등이 분포하고 있는바,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 영향이 미치는 지역까지 평가대상지역을 설정</li> </ul>	<p>○ 취미항 어촌정주어항 지정계획은 계획특성상 해양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바, 해양분야에 대한 검토를 중점적으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주변 어업권이 분포하고 있는바,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까지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토록 하겠음.</li> </ul>	
	<p><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p> <p>○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2023. 04. 13」에 준하여 사업특성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토록 하여야 함.</p>	<p>○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2023. 04. 13」에 따라 사업의특성과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항목별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p>	
	<p><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p> <p>○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에 따른 해당지역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해양환경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해양수질·저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로 함.</li> </ul> <p>○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태계 및 해양수질·저질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예측·평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li> </ul> <p>: 본 계획과 연계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 <p>○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태계 조사시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 및 지점등을 선정하여야 함.</li> </ul>	<p>○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 계, 해양수질·저질 등 에 대한 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음.</li> </ul> <p>○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태계 및 해양수질·저질등은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범위등을 검토하여 설정함.</li> </ul> <p>: 본 계획과 연계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등을 제시토록 하겠음.</p> <p>○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생태계 조사시 분포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이 활발한 시기등으로 조사시기를 선정토록 하겠음.</li> </ul>	
	<p><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b></p> <p>○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장소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선정하시기 바람</p> <p><b>5. 기타 의견</b></p> <p>○ 의견없음</p>	<p>○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주민설명회 장소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선정토록 하겠음.</p> <p>○ 의견없음</p>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		
	<input type="checkbox"/> 해수유동 변화 및 준설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input type="checkbox"/> 해수유동 변화 및 준설면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등에 대한 대안 검토를 실시하겠음.	
	<input type="checkbox"/>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input type="checkbox"/> 사업지 주변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input type="checkbox"/> 계획대상지를 중심으로 항목별 영향예측범위등을 선정하여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겠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input type="checkbox"/>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수유동 변화 및 준설면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input type="checkbox"/> 해수유동 변화 및 준설면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등에 대한 대안 검토를 실시하겠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input type="checkbox"/> 해양동·식물상 및 해양환경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문헌조사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사업지 주변을 대상으로 해양동·식물상 및 해양수질·저질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현재 쉬미항과 주거지역으로부터 항내측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해양동·식물상 및 해양환경(해양수질, 저질)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등을 실시토록 하겠음.  <input type="checkbox"/> 계획대상지 주변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겠음. <input type="checkbox"/> 쉬미항과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등을 검토하고 추후 추가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계획을 수립하겠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input type="checkbox"/>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진도군 환경수질과	<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		
	<input type="radio"/> 본 계획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규모등을 수립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본 계획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규모등을 수립토록 하겠음.	
	<input type="checkbox"/> 심의의견		
	<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 <input type="radio"/>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해양환경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해양환경등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하겠음.	
	<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 <input type="radio"/> 계획대상지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 해양환경에 대한 환경보전 목표를 수립, 달성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계획대상지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 해양환경(수질, 저질)등에 대한 보전목표를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 <input type="radio"/>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input type="radio"/>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input type="radio"/>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 - -	
<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b> <input type="radio"/> 주민의견 수렴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청취하며 동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주민의견 수렴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b>5. 기타의견</b>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주민대표 (산월 어촌계)	<input type="checkbox"/> 총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쉬미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li> <li>○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쉬미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음.</li> <li>○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등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본안)등을 작성하겠음.</li> </ul>	
	<input type="checkbox"/>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관련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대한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예측분석에 사용할 기법, 내용 등 선정사유와 타당성을 상세히 명시토록 하겠음.</li> </ul>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  -  -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li> </ul>		
5. 기타의견 ○ 의견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없음</li> </ul>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그린진도21	<input type="checkbox"/> <b>총괄 의견</b>		
	<input type="radio"/> 본 계획은 어촌정주어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본 계획은 어촌정주어항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input type="checkbox"/> <b>심의의견</b>		
	<b>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b> <input type="radio"/> 본 계획이 위치한 진도읍 산월리는 해안과 인접하에 위치한바, 육상생태계조사 및 해양환경 조사등 관련법에 맞는 적절한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본 계획이 위치한 진도읍 산월리는 해안지역에 위치한 바, 육상생태계조사 및 해양환경 조사등은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검토대상지역을 설정토록 하겠음.	
	<b>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b> <input type="radio"/> 본 계획이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표수질보다는 해양환경(수질)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정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본 계획은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 지표수질보다는 해양환경(수질)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토록 하며,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	
	<b>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b> <input type="radio"/>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input type="radio"/>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input type="radio"/>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적정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b>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b> <input type="radio"/> 관련법에 따라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input type="radio"/> 본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		
<b>5. 기타의견</b>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구 분	심의의견	반영결과	비고
	<p><b>□ 총괄 의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파제 100m로 복서계절풍이나 태풍 등에 따른 재해에 충분하지? 특히 해안선에 수직으로만 조성된 방파제는 물의 회절이나 굴절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부가적 영향 초래 가능성 존재</li> <li>○ 화물선 부두를 포함한 방파제 건설을 통해 안전한 어항구역의 정온성 확보가 필요하며, 공유수면 매립 최소화 및 배후토지 활용 검토</li> <li>○ 실제 주차장 등 방문객의 편의시설 등은 배후지에 적극 검토하고, 어항 구역은 지정 목적에 부합도록 어업활동을 위한 각종 시설 배치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미항 접안시설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방파제 설치 위치에 따른 정온도실험을 시행하였으며</li> <li>○ 공유수면 매립이 최소화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배후 토지에 대한 이용여부 또한 검토해보도록 하겠음.</li> <li>○ 계획대상지 내 주차장은 주민/방문객이 쉽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음</li> </ul>	
	<p>광주전남 연구원</p>	<p><b>□ 심의의견</b></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에 따른 영향가능성에 대한 검토, 특히 page 56에 어업권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 및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직간접적 영향의 범위 설정 필요(항후 갈등가능성에 대한 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정주어항지정 구역 내 직접영향권으로 설정, 대상지 주변지역의 어업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토록 설정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대한 확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수질, 저질)에 대한 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며, 추후 공사시 및 운영시 모니터링에 대한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음.</li> </ul>	
<p>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현재 어업권 지역(직접, 간접)까지 확대하여 조사 및 모니터링(사업추진 및 시설물 운영과정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정주어항지정 구역 내 직접영향권으로 설정, 대상지 주변지역의 어업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토록 설정하였으며, 추후 모니터링계획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검토토록 하겠음.</li> </ul>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li> <li>○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수질(해양환경)에서 영향 범위 확대 필요, 현재 계획지구와 주변해역으로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음.</li> <li>○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에 대한 의견 : page 32에 평가대상지역에 직접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해양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있어 명확한 제시 필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정주어항지정 구역 내 직접영향권으로 설정, 대상지 주변지역의 어업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토록 설정하였음.</li> <li>○ 어촌정주어항지정 구역 내 직접영향권으로 설정, 대상지 주변지역의 어업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하여 공사 시행에 따른 영향을 예측토록 설정하였음.</li> </ul>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수렴은 특히 어장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주민의견의 내용을 수렴할 수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음.</li> </ul>	
<p>5. 기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ge 10에 어항현황도에서 해남에 3개 항 표기</li> <li>○ page11 : 취미항은 북측으로 개방됨</li> <li>○ page 85 : 준설토의 처리방안과 매립토의 공급대책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도군 주변인 해남군에 위치한 3개항을 표기하였음.</li> <li>○ 취미항을 기준으로 북~북서측으로 개방되어있음으로 표기토록 하겠음.</li> <li>○ 준설토 및 매립토는 발생량등을 검토후 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li> </ul>		

##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표 3 - 1>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설정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의 상위계획과 연계성 검토	○ 계획지구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의 설정 및 검토	○ 계획지구	
입지의 타당성	<b>□ 자연환경의 보전</b>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육상식물상 : 100m - 육상동물상 : 300m - 해양생태계 : 주변해역
		자연환경 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 및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등에 의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 존재여부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지형·지질 현황 및 입지특성 파악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 여부 파악 ○ 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경 관	○ 주변의 경관 현황 파악과 영향여부 조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해양환경)	○ 시설물 설치공사 및 준설등에 따른 토사유출 영향 ○ 계획수립으로 인한 해양수질 및 퇴적물 영향 검토 ○ 운영시 오수발생 검토	○ 계획지구 주변 해역 - 직접영향권 : 계획지구 내 - 간접영향권 : 주변어업권 구역
	<b>□ 생활환경의 안정성</b>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기상인자별 현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대기질	○ 대기오염도 현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500m 이내)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현황 ○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	○ 계획지구
		소음·진동	○ 소음진동 현황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소음·진동에 영향 발생 여부	○ 계획지구 및 소음진동 영향범위 (계획지구 500m 이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여부 파악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폐유, 생활폐기물, 분뇨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
	<b>□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b>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사업계획 현황 파악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계획지구 및 편입예상지역



(그림 3 - 1) 검토대상지역 설정도

# 제4장 대안의 설정

---

4.1 대안의 설정

4.2 대안의 비교 · 검토

## 제 4 장 대안의 설정

### 4.1 대안의 종류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절차와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개발기본계획 대안의 설정은 개발입지 대안, 중점 평가항목별 대안과 토지이용계획(또는 노선) 대안의 종류를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대안의 종류는「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2023.04.13)」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에 따라 설정하였음.
- 본 계획은 어촌정주어항지정계획에서의 대안의 종류는 계획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비교,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선정함.

<표 4.1 - 1> 대안의 설정 방법

종 류	선정방법	선정 유무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 4.2 대안의 비교·검토

### 가. 계획비교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 - 1> '계획비교'안에 대한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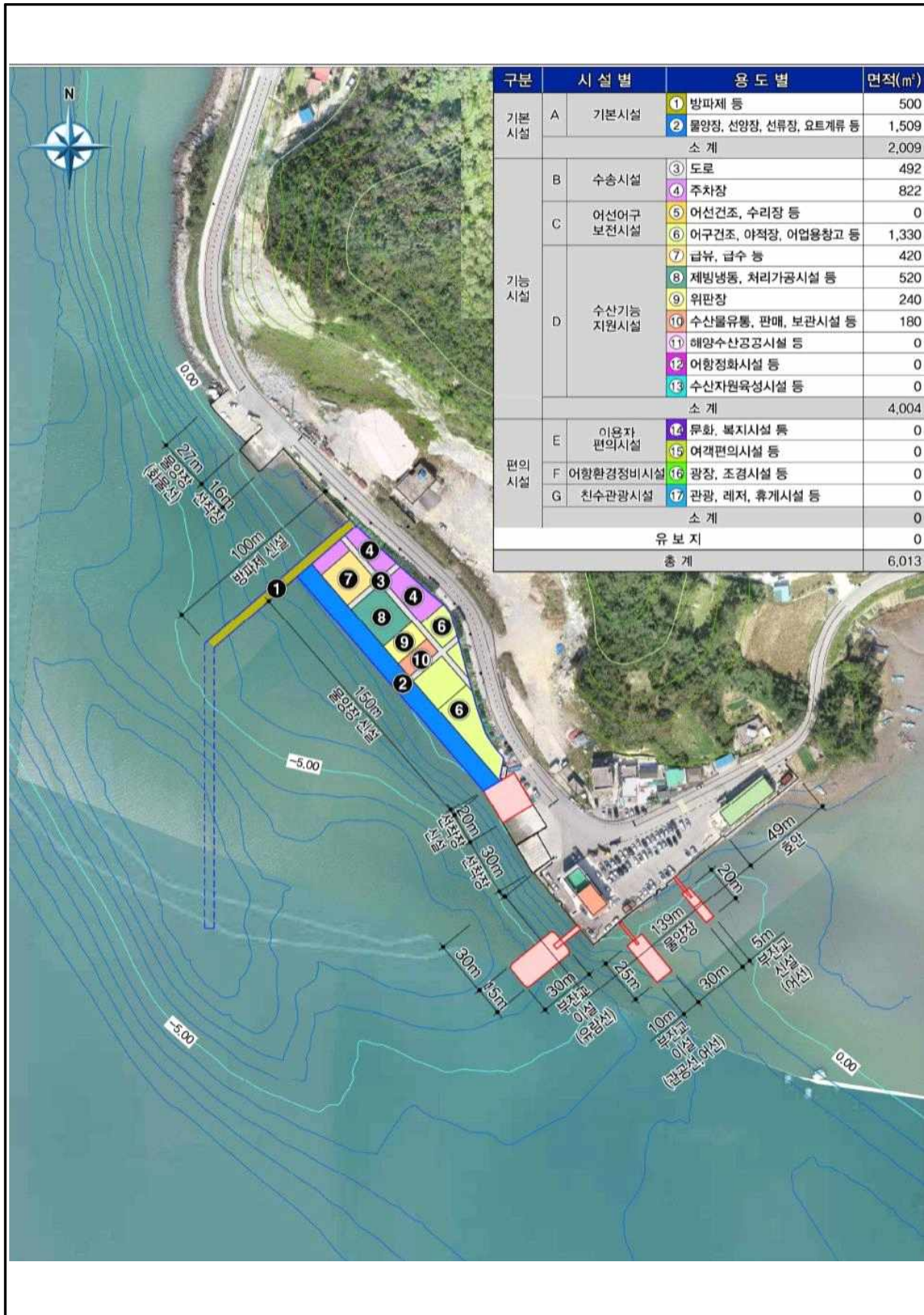
구 분	대안1 (Action)	대안2 (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및 어업활동 지원 소형어선안전정박 등에,필요한 어항시설 조성으로 어항으로의 기능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이용의 변화는 없으나, 어항으로서의 기능 및 어업관련 시설 부족</li> </ul>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가 환경보호지역에 편입되지 않으나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공사소음 및 부유토사 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지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 없음(현재 상태 유지)</li> </ul>
생태계 훼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공사소음 및부유토사 발생 등으로 해양생태계에 일시적인 영향이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 변화 없음(현재 상태 유지)</li> </ul>
지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시설 설치에 따른 해안 변화 등이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 변화 없음(현재 상태 유지)</li> </ul>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항시설 정비로 태풍, 고조, 해일 등 발생시 어항의 여러 기능시설 보호 및 어민의 재산 보호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상태 유지로 태풍, 고조, 해일 등 발생시 재해 예방에 취약</li> </ul>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일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소음 및 부유토사 발생 등이 예상되나, 어항시설 설치로 어업활동 지원시설조성, 어민 재산보호 등 생활환경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현재 상태 유지)</li> </ul>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자원 및 스카이라인 훼손 등은 없을 것이나 어항시설 설치에 따른 경관 변화가 예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 소음·진동 수질 등 환경기준 항목에 미치는 영향 없음</li> </ul>
선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며, 최대의 기대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1(계획수립)을 선정함.</li> </ul>	

나. 수요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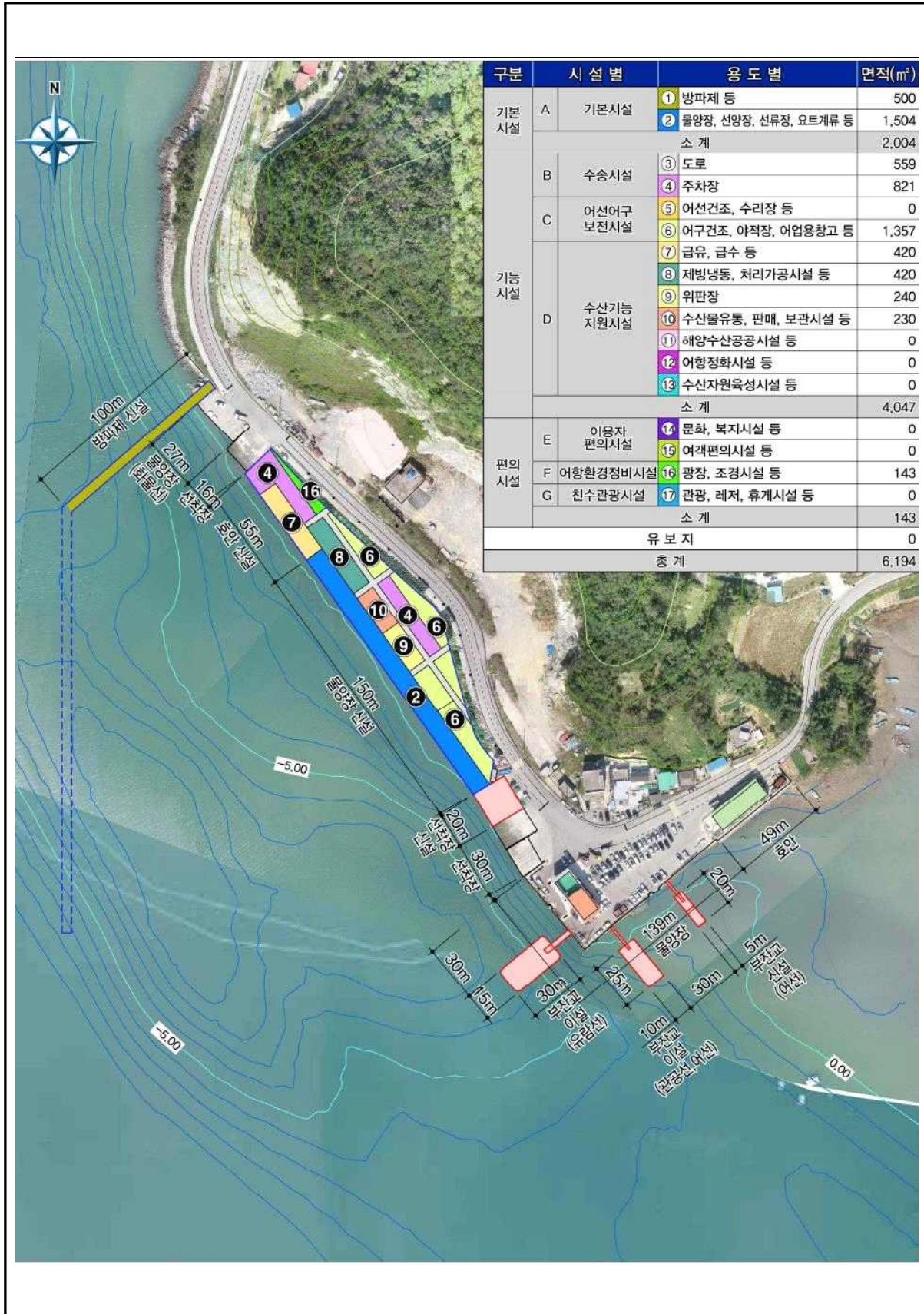
○ 어항시설 계획안을 수요·공급 대안을 설정하였고, 본 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 - 2> 수요공급의 비교

구 분	대안1	대안2
평면배치계획		
어항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파제 : 100m</li> <li>▫ 물양장 : 150m</li> <li>▫ 준 설 : 2,073㎡</li> <li>▫ 매 립 : 5,5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파제 : 100m</li> <li>▫ 물양장 : 150m(호안 : 55m)</li> <li>▫ 준 설 : 3,148㎡</li> <li>▫ 매 립 : 5,694㎡</li> </ul>
도입 기능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도로 : 1,314㎡</li> <li>▫ 어구건조·수리 : 1,330㎡</li> <li>▫ 급유·급수 : 420㎡</li> <li>▫ 냉동·가공 : 520㎡</li> <li>▫ 위판장 : 240㎡</li> <li>▫ 유통·판매 : 180㎡</li> <li>▫ 면적 합계 : 4,00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도로 : 1,380㎡</li> <li>▫ 어구건조·수리 : 1,357㎡</li> <li>▫ 급유·급수 : 420㎡</li> <li>▫ 냉동·가공 : 420㎡</li> <li>▫ 위판장 : 240㎡</li> <li>▫ 유통·판매 : 230㎡</li> <li>▫ 면적 합계 : 4,047㎡</li> </ul>
특 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활동 구역과 여객편의 구역의 분할 계획</li> <li>▫ 해안선 훼손 최소화</li> <li>▫ 육상기능시설의 집약화, 이용성 우수</li> <li>▫ 기존 화물선 물양장 정은 미확보</li> <li>▫ 공사비 저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활동 구역과 여객편의 구역의 분할 계획</li> <li>▫ 해안선 훼손구간 증가</li> <li>▫ 육상기능시설의 분산, 이용성 보통</li> <li>▫ 기존 화물선 물양장 정은 확보가능</li> <li>▫ 공사비 고가</li> </ul>
공사비	83.6억원	87.4억원
선정	◎	



(그림 4 - 1) 평면배치(1안)-선정안



(그림 4 - 2) 평면배치(2안)

## 가. '수요공급' 대안검토 결과

- 본 검토에서는 기존 어항시설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결과와 진도군청에서 추진 중인 쉬미항 거점개발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쉬미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평면배치(안)를 검토하였음.
- 앞에서 검토한 현상태 최적 운영방안은 현재 어항의 운영상 문제점을 완화시키고 1~3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 최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였음.
- 쉬미항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관점(2025년 이후)에서 현 시설의 한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어항운영이 가능하도록 어업활동구역(신규 배치)과 여객편의구역(기존 어항구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외곽시설, 집안시설 등의 기본시설과 육상기능시설을 반영하였음.
- 한편, 쉬미항은 황천시 항 입구로부터 N계열의 침입파랑과 S계열~W계열의 향내 발생과랑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어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향내 정온기준(양육부두 : 0.3m)을 만족시키는 외곽시설을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본 평면배치계획에서 방파제는 주파향인 N계열 파랑을 저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S~W계열의 파랑에 대해서는 향후 어항의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외곽시설 추가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상기의 여건을 고려한 평면배치안별 비교·검토 결과, 제1안이 제2안에 비해 기존 해안선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육상 기능시설의 집약화가 가능하여 이용성이 우수하며, 사업비가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어 최적안으로 선정하였음.

# 제5장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설정

---

5.1 평가항목 · 범위 · 방법등의 설정

5.2 조사 · 예측 · 평가 방법

## 제 5 장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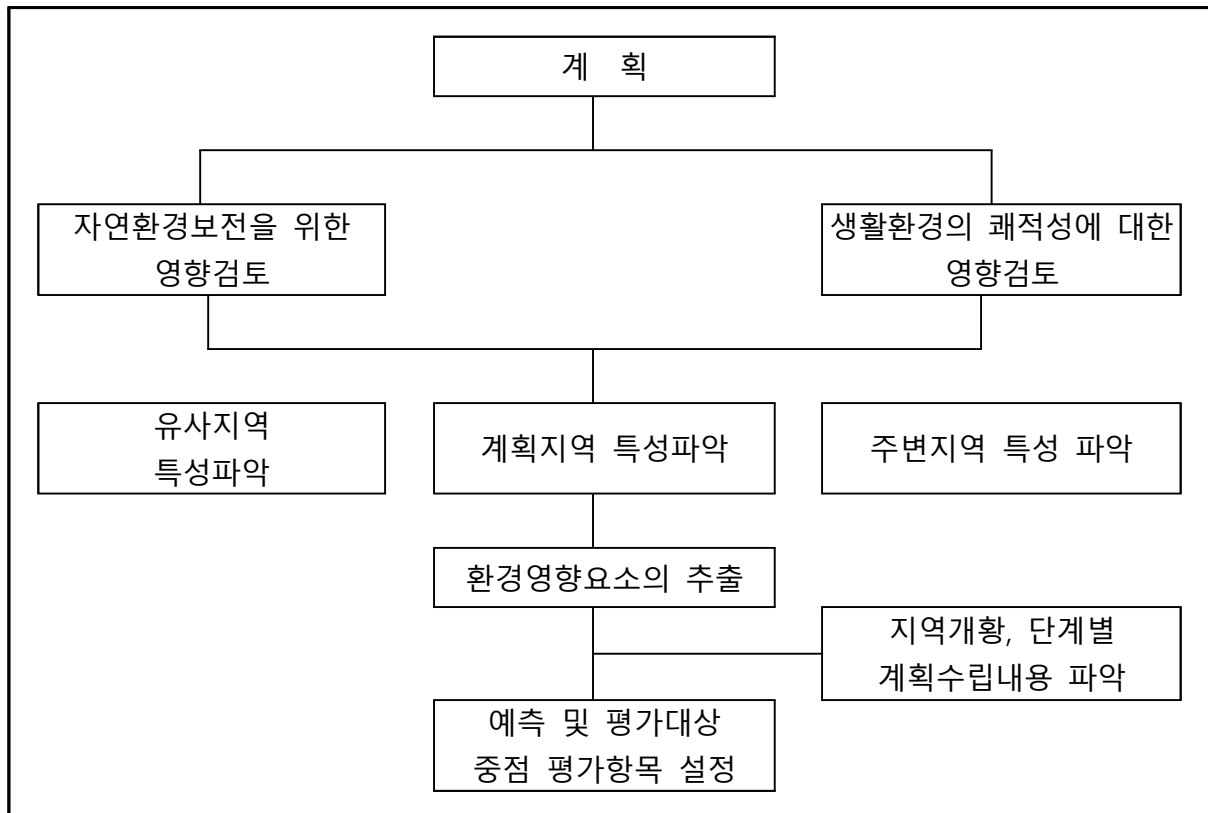
### 5.1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설정

#### 5.1.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검토항목은 사업의 유형별·단계별 환경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중점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3-74호, 2023.04.13.』 등을 참고하여 설정함.

#### 가. 환경영향요소 및 항목의 추출

- 환경영향요소의 추출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제반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계획 및 현장조사, 사업특성,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출함.



(그림 5.1 - 1) 환경영향요인 추출 모식도

나. 평가항목의 설정

<표 5.1 - 1> 중점 항목의 선정 및 선정(제외) 사유

구분	평가항목		항목선정			선정(제외) 사유	
			중점	일반	제외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			◦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개발지표의 방향을 제시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 계획의 비교 등 대안 비교·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변환경 훼손에 따른 동식물의 영향 및 변화
			자연환경자산		○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에 대한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검토
		지형 및 생 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 계획지구의 지형·지질 특성 파악 및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환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	○			◦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위락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수환경의 보전	수질 (해양환경)		○		
	수리수문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		◦ 대기질 예측에 따른 기초자료 활용
			대기질	○			◦ 공사시 토공작업에 따른 비산먼지,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취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온실가스		○		◦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토양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소음진동	○			◦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전파장해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일조장해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위생·공중보건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여부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공사시 폐기물 발생예상 및 처리대책 수립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파악
		인구·주거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산업				○	◦ 계획시행에 따른 영향이 미미		

## 5.2 조사·예측·평가 방법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음.
-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기존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수립

<표 5.2 - 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황조사	예측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현황(식생현황, 수변습지등의 분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 현지 조사시 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정밀조사 -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이들 보호대상이 계획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지질상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와 기존 문헌 자료 참고 - 지형의 변화, 토지 및 사면의 안정성 등을 예측
	자연경관의 보전	① 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실시 - 현장 및 문헌조사를 통한 경관영향 검토 - 자연의 훼손정도, 조망의 변화 예측
	수환경의 보전 (수질, 해양환경)	① 조사내용 - 해양수질, 해양저질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농도 -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해역	③ 조사방법 - 문헌조사 실시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연안에 미치는 영향예측 - 운영시에 따른 발생오수 발생량 검토

<표 계속>

평가항목		현황조사	예측방법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① 조사내용 -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풍향, 강수일수, 일조시간 등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 기상관측소의 10년간 (2013~2022) 기상자료 이용 -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이용
		대기질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 조사된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정리 - 연료사용량과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의 상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 - 공사시 소음·진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음·진동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여부 파악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중벌,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사회·경제환경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토지이용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분석 - 기존 문헌 및 유사사례 조사

##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6.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결정내용 공개

6.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6.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것임.

### 6.2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 의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 본 계획의 주관인 진도군 홈페이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일간신문)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본 계획대상지가 위치하는 진도군의 주관부서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고, 본 계획의 주관인 진도군 홈페이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할 것임.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설명회 및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기로 할 것임.

#### 나. 참고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